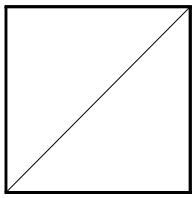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32호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의결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수도권 外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예대율 가중치 하향 (안 제26조 제1항 제3호)

□ 수도권 外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예대율 가중치는 85%→80%로, 개인사업자는 100%→95%로 하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26.1.26. ~ 2.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 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자금대출(개인사업자에”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수도권에 소재한 개인사업자”로,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을 “차감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100분의 20을 차감(그 외 지역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은 100분의 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외 지역 예대율 가중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예대율 가중치에 대한 적용은 이 규정 시행 후 취급된 자금대출부터 적용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4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하 “본지점차입금“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본지점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	3. ---------- ---------- ---------- ---------- ---------- ---------- ---------- ---------- ---------- ---------- ---------- ---------- ---------- ---------- ---------- ----------

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 중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과 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을 합한 금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발행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수도권에 소재한 개인사업

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취급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	자---- 차감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100분의 20을 차감(그 외 지역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은 100분의 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은행리스크감독국장
연 락 처	02-2100-2954	02-3145-8350